

아시아 인권운동의 동향과 네트워크 형성의 전망

A 주제발표

- 1 이주노동운동의 흐름과 국제연대
----- 이대훈(참여연대)
2 아시아 인권의 실태와 운동의 흐름
----- 오완호(국제 엠네스티)

B 지정토론 : 네트워크 활용의 사례 발표 및 국제연대 활성화 전망

박석운(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김해성(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이금연(안양 전진상사회복지관 이주노동자의 집)

- 일시 : 1998년 6월 30일 (화) 오후 2시 - 6시
■ 장소 : 명동 전진상 교육관 강당(1층)

최근 노동이민의 상황과 국제연대의 방향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처장

1. 개관

최근 20여년간 가속화된 전세계적인 “경제세계화”로 선진국에서의 구조조정 완료, 그에 따른 공장이전, 해외투자 증대, 무역자유화, 일국적 국제적 빈부격차의 증대가 야기되었다. 개발도상국에서 조차 구조조정의 결과로 야기되는 빈부격차와 산업구조 파행화로 인하여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산업부문별로 불안정해지면서 값싼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예외로 할 때 한국, 홍콩, 대만, 태국에서도 저임금 기피직종의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가 급증했다. 예를 들어 태국 같은 경우 경제호황 기였던 1994년에 연 73만여명의 외국인 노동력을 흡수했다. 1990년 일본은 숙련노동자의 국내취업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제도를 입법화해 시행하기 시작했고 (93년 130여만명의 외국인노동자 존재, 총 노동인구의 1.5%) 한국은 산업연수생 제도로 외국인 노동력을 흡수했다. 대만은 주로 비숙련 노동자를, 말레이지아는 건설노동자와 가내노동자(가정부)를 유입했다. 1994년 홍콩에는 노동력의 7.3%인 22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다. 대만의 경우는 22만여명, 노동력의 2%, 싱가포르는 25만여명으로 노동력의 18%, 말레이지아는 110만여명으로 노동력의 15.5%, 필리핀은 1995년의 경우 420만명을 송출했다. 중국역시 매년 10-20만명의 불법 노동력이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냉전체제의 붕괴와 국지 갈등으로 새로운 노동이민이 대두되는 가운데, 1980년대 후기 노동이민은 전세계적으로 약 1억명으로 추산되었으나 1990년 중반에는 약 1억2천5백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전세계 인구 50명당 1명 꼴로 생계를 이유로 외국으로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평균 2.4백만명의 증가를 보인다는 의미이다. 아시아의 경우 잠재적 노동이민규모가 약 1억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0년 노동이민 증가는 크게 세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전통적인 후진국-선진국 이동, 내전으로 인한 이동, 아시아에서의 노동력 수요에 따른 이동이다. 노동이민의 4대 직종은 건설업, 제조업, 가사노동, 유통업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문제〉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및 문제는 공통적으로 5가지로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1) 송출과정에서의 비리, (2) 근로계약과정에서의 비리, (3) 근로과정에서의 비리, (4) 다양한 차별 : 출신국 내지 인종에 의한 차별, 법적 지위에 대한 차별, 숙련도와 지식(고급인력, 저급인력)에 따른 차별, 성차별 (5) 가족 유지의 곤란함 등이다.

〈사회적 여파〉

뿐만 아니라 노동이민의 증대는 다양한 사회적 여파를 미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1) 선진국 개도국 모두에서 나타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대감과 폭력의 증대, (2) 노동이민 억제 중심의 정책이 가져오는 이주노동자들의 주변화 효과(사회적 통합을 불가능하게 하는 효과), (3) 경제위기와 빈부격차가 세계적으로 확산, 심화되면서, 그리고 노동시장의 변화가 오히려 노동이민의 증가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 (4) 유동성의 증가;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파괴하는 정치·경제·사회적 변동의 심화가 크게 우려되는 현상으로 지적된다.

〈시민사회의 대응〉

여기서 대해서 지금까지 각국 및 국제 시민사회의 대응은 주로 (1)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 (2) 내국인과 동등한 근로조건, (3) 동등한 노동기본권, (4) 동등한 사회보장권 (5) 자녀국적 취득 및 교육의 권리 (6) 노예노동 및 인신매매의 금지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비정상적인 노동이민 야기하는 근본 원인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어 왔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추세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2. 이주노동자의 인권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편적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에서는 이주자의 보편적 권리, 난민의 권리, 이주노동자의 권리 를 구분해서 접근하고 있어서 참조할 만하다.

가. 이주자의 권리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이민과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정식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단 이민자의 권리라는 범주는 성립하지 않으며 이민의 형태에 따라 권리의 종류가 구분된다. 주로 이민과 관련된 권리는 이주자의 권리, 축출자의 권리, 난민의 권리로 구분된다. 모든 이주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보편적 인권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서 이주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은 국가주권, 각국의 시민권이 같은 배타성을 능가하는 권리 기준이다. 명시하자면:

차별 금지

생명, 자유, 안위에 관한 권리

노예화와 예속의 금지

고문과 비인간적 처벌의 금지

형사불소급의 원칙

개인생활과 가족생활의 보호

입국 및 출국의 권리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아울러 각각의 기본적 인권은 보다 세부적인 국제규약의 규정을 받는다. 대표적으로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나. 이주노동자의 권리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여러 국제규약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고안된 것이다. 중요하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고용이민협약(97호), 고용이민권고(86호), 이주노동자협약(143호)가 있다.

97호 협약은 이주노동자의 모집과 근로조건 및 평등한 대우의 원칙을 규정화 있다. 86호 협약은 불법 이민과 불법 채용의 금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협약 가입국 정부가 불법 이주노동을 야기하는 제도와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43호 협약은 평등 대우의 원칙과 이주 노동자의 기본 인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 권리에 관한 협약(1962년, 1982년)에 관한 것이 있다.

최근 가장 중요한 성과는 1990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규약]이다. 이 규약은 지금까지 제기된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최소 수준에서 담고 있으며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는 큰 명분을 안고 있다. 현재 대다수 이주노동관련 민간단체는 이 협약의 비준을 주요 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으며, 1996년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이주노동자 워크숍에서도 이 규약의 비준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지역적 성과로는 중남미지역에서 1996년 개최된 푸에블라 중남미이주문제 회의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남미의 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들은 공통의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각국의 이주통제 정책 검토, 이주관련 인권보호 방안, 공무원 교육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면서 2년마다 이같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3. 대응 과제

가. 전제

(1) 수입국 정부의 유인동기 조절 효과보다 송출국의 송출동기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점.

(2) 개인의 국제이동의 자유와 동기를 각국 정부와 효과적으로 통제할 근거와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

(3) 노동이민의 전체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지역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4) 아태지역의 잠재적 이주노동자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1억 이상으로 추정)

나. 97년 이주노동자 캠페인 이후의 과제

97년 세계교회협의회를 비롯한 국제 민간단체들은 이주노동자의 상황을 널리 알리고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벌였으며, 그 전후로 국제이주노동자협약 비준 캠페인이 전개된 바 있다 (주관은 국제이주민권리감시위원회(International Migrants Rights Watch Committee (IMRWC)로 199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유엔 주최 국제인구개발회의를 계기로 민간단체들이 결성한 단체). 이러한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과제로 제기된 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국제이주노동자협약의 홍보 및 비준 촉구
- (2) 이민정책을 이민자의 보편적 인권보장에 기초해서 수정하도록 촉구(예: 남아프리카공화국)
- (3)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문제 사회적 여론화
- (4) 지역활동에서 “연대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 (5) 이웃 외국인들의 나라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대중 프로그램
- (6) 구조적 원인 치유를 위한 국제연대 (송출국 경제개발문제에 관한 국제연대)
- (7) 이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 및 정책토론의 활성화

다. 국제적 맥락에서 전개할 활동과제

- (1) 능동적인 이주노동문제 활동센터 필요
 - 국내활동의 조정, 정보집중, 로비, 언론활동, 조사연구, 국제관계활동을 수행
- (2) 유엔 이주노동자협약 비준운동 동참
 - 국내 시민사회, 사회운동 지도층에 대한 홍보·교육 선행
 - 남아공 등 외국의 사례를 기초로 [노동이민 특별조사보고서] 작성 촉구
- (3) 유엔 인권기구의 이용
 - 감시활동 (상황정보(보고서)를 제공하여 유엔 감시기구의 역할 증대)
 - * 유엔인권위원회, 인권소위의 특별보고관(여성폭력, 고문, 표현의 자유), 실무그룹(임의구금, 구조조정, 인권운동가보호)
 - * 협약기구(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유엔인권이사회), 여성협약철폐협약기구, 고문방지협약기구...)
 - 제소활동 (피해자가 직접 해당기구에 소를 제기하여 여론효과 증대)
 - * 유엔 1503제도에 따른 유엔으로의 직접 제소
 - * 유엔인권기구(유엔인권이사회, 인종차별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 * 국제노동기구,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에 제소
 - 교육프로그램
 - * 유엔인권센터와 같은 기구와 협력하여 일종의 실무훈련 프로그램으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 민간단체 공동워크숍] 개최

(4) 민간 국제기구의 이용

- 국제이주기구(IOM)이나 국제이주민감시위원회(IMRWC) 등과 같은 단체와 협력하여:
 - * [경제위기가 이주노동자 인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공동 조사
 - *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전문 교육훈련 워크숍] 개최
 - * [아시아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발간 등의 활동 전개

(5) 국제여론화

- 일상적 정보유통 : 사례와 상황정보를 동시에
- 아시아적 맥락에서 한국 문제를 접근
 - 예) [아시아경제위기와 한국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연관성]에 관한 국제여론화
- 지역별 투자·협력기구의 의제로 상정 노력
 - 예) 아페 의제로 상정하기 위하여 정부와 교섭
- * 목표 : 의제상정 및 그 결과로 이주노동위원회 설치
- * 대정부 설득 논거 : 국제인권기준과 흐름 같이 함/ 지역에서의 이주노동에 대한 상황 파악/ 적절한 조절정책 마련/ 각국간 정보 상설교환으로 조절력 증대/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협의 증진

(6) 기업 윤리강령/가이드라인의 제정

- 국제이주노동자협약의 내용을 기업의 윤리강령으로 정리해서 사회적 감시/ 압력 기준 및 기업의 자발적 기준으로 정착시키도록 하는 접근.

(7) 연계 활동

- 나프타협정 체결시 북미주 민간운동의 대응을 참조로 해서 아태지역 무역·투자 자유화 조치의 시행시 노동기준을 부대조건으로 상정.

*** 국 내에서의 인권적 접근 :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 - 국내적으로는 현재 논의가 시작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인권기준 및 국제이주노동자협약의 정신과 일관되게끔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본연의 사안으로 다루고, 적절한 조사 및 구제의 권한을 갖도록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10주년을 기념하여 새 정부가 무언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 국제이주노동자협약의 비준문제가 거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의 인권

오 완호 사무국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인류는 과연 문명적인가? 매일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인간과 지구를 대하는 사람으로써 결코 긍정적인 입장에 설 수 없다. 세계는 분쟁과 갈등속에서 급속한 물질문명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혼동되고 있다. 하루 밤새 6,000여명의 사람들이 죽창에 찔려 살해된 브룬디 사태를 직시하면서, 기아와 질병으로 짚어 죽어가고 있는 수백만명의 생명과 외국인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지 않는 간악한 인간의 욕심과 더불어 우리는 생활하고 있다. 과연 인간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부패와 유태의 토대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루하루가 어지러운 나날이며 몸을 주체하기가 몹시 힘들다. 세계가 민주화의 과정으로 이행하고 있다지만, 사상, 피부색, 종교 등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금되고 고문당하고 있다.

세계의 상황이 이러한데 조금 경제성장을 했다고 큰소리치는 아시아의 특히 이른바 용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아시아에서 어떻게 인간을 잡아가두고 두들겨 패 죽이는지 살펴보자.

1. 아시아적 가치 주장에 대한 비판

아시아국가들은 기존의 서방국가들과는 다른 새로운 지정학적 관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역의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이곳이 경제적 급성장 지역이라는 점이다. 하나의 지역으로 묶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이 지역을 위한 국제협력의 새로운 단초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 지역의 일부 국가들이 국제인권규준의 개념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도전은 하나의 사회질서속에서의 인권의 위치에 대한 철학적 신념으로 까지 소급되고 있으며, 서구사회에서 '자유'는 실패했으며 아시아권 문화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까지 이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도전은 인권규준의 국제적 적용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운동을 가로막는 도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리는 홍콩과 싱가폴, 한국, 대만의 GDP는 지난 30년간 매년 10%가량 증가해 왔다. 역사상 가장 급속하게 국가의 부를 지속적으로 신장시키고 있는 이들 국가의 전례를 따르기 위해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도 혈안이 되어 있다. 경제개발과정에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이와 병행되는 민주화 요구와 인권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긍정적인 측면이든 부정적인 측면이든 이것을 수행하는 막강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인권의 보편성에 대해 정치적 문화적 이유를 들며 반발하는 주요국가로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

이시아, 싱가풀을 들 수 있다. 논쟁은 실제에 있어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지만, 그중 몇가지 문제를 짚어보자. 흔히 사회적 권위를 '아시아 문화'의 한부분으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 예를 들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의 중요성과 사회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가족내의 권위에서 볼 수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모든 정부들이 정부의 권위를 존중할 것과 정치적 안정 이를테면 권력유지를 요구하는데서 쉽게 발견된다. 모든 사회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권위가 존재한다. 그러나 '권위에 대한 존중'이 가정이나 학교 혹은 국가에서 벌어지는 '저항'에 대한 야만적인 처벌을 어느 선까지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현재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질문과 싸우고 있다.

수세기에 걸친 아시아 역사의 정점에서 증가하고 있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많은 분야에서 반대에 대한 탄압을 약화시키고 있다. 식민지 지배는 권위적이었다. 마찬가지로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 역시 권위적이었으며, 모든 정책은 민족의 적으로 매도되었다. 독립을 쟁취한 다음에도, 많은 새로운 지도자들은 반대세력 제거운동을 계속했으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해 왔다. 새로운 지도자들은 식민지 지배자들로부터 비민주적인 체제를 물려 받았으며, 분리주의와 무장봉기, 부패,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병폐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종교적 근본주의에 직면해야 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들은 정치적 억압 특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후에도 계속된 정치적 억압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들의 일반적인 반응으로 미루어 볼 때, 아시아 국가들은 국제인권규준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아시아 국가들은 국제인권규준을 '반아시아적'이거나 '외국의' 것으로 간주한다. 싱가풀의 외무부직원인 "키쇼르 마부바니"는 한가지 전략을 분명히 하였는데, 그 전략은 다음과 같다. 그는 범죄, 마약, 살인, 이혼, 십대 자살과 같은 서구(미국)의 도시사회 붕괴와는 달리, 아시아 도시지역은 가족과 권리 등에 대한 강조로 상대적으로 질서와 안전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결국 서구사회의 붕괴 원인은 "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소수 개인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다수의 자유를 강화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여기는 생각없는 사상"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이라고 결론내렸다.

집단 대 개인. 이 논리는 언뜻 매우 그럴듯하게 들린다. 가족의 안정과 도시의 붕괴는 서구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염려하는 바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것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결속이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열망으로 인해 종국에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만약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대만, 중국, 태국과 같은 나라에서 법보다 우위에 있는 군인들의 총부리가 시민들의 삶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인권운동가들 역시 지속적인 안정의 강화를 환영할 것이다. 어떤 점에서는 정부들조차도 인권보호가 자국의 안정을 앞당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세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은 자국정부에 의해 위협적인 선택과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의 용기에 달려 있다. 국제사회는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구조들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국제사회는 1945년 만장일치로 유엔헌장을 채택할 만큼 세계를 경악속으로 몰고간 두번의 세계대전과 대학살, 패시즘을 체험하였다. 이 헌장은 전지구적인 규준으로서, 국가간의 평화와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들은 일관성있게 헌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거나 이 헌장에 따라 제정된 국제협약들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 일부 아시아국가들은 국제인권규준을 무시하고 오직 자국의 고유한 역사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아무리 고유한 역사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억압을 허용하는 명백히 '아시아적인' 통치방식을 정당화시켜서는 안된다. 인권에 대한 '아시아적 관점'은 서구사회나 일부 비판가, 운동가들에 의해 부정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실제 인권

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아시아인들에 의해 더욱 강하게 부정되고 있다.

2. 아시아의 인권상황 개괄

아시아의 인권상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그중 미얀마,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의 정치탄압 양태와 현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자

양심수에 대한 구금

매년 적어도 15개국에서 수천명의 양심수 또는 양심수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구금되었다. 중국과 인도에는 수천명의 정치범이 존재하며, 인도네시아에는 수백명이 구금되어 있다. 미얀마, 파키스탄, 한국, 스리랑카 등 각국에는 수십명에서 수백명의 양심수가 구금되어 있다.

영장또는 재판없는 이루어지는 구금

매년 중국, 인도 등 15개국들은 재판이나 영장없이 6천여명의 정치범을 구금하였으며,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에서도 수백명의 사람들이 구금되고 있다.

불공정한 재판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 적어도 6개국가는 매년 불공정한 재판을 행하고 있다.

정부에 의한 “실종”

매년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에서는 수백명이 정부에 의해 “실종”되고 있다. 지난 해부터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에서 수백명이 “실종”되고 있다.

비사법 처형

96년 한해동안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등 8개국에서는 보안군이 거리나 마을에서 재판도 없이 수천명을 살해하였다.

고문과 가혹행위

96년 한해동안 20여개국에서 경찰서안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4개국에서 구금과정에서 고문과 비인간적 구금환경으로 인해 수인들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인도에서는 고문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수백건이나 발생하였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서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고문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몽고에서는 90명의 죄수가 굶어죽거나 추후 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사형제도

95년 한해동안 중국은 적어도 2천4백96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렸고 1천7백91명을 사형집행하였다.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한국, 대만 등 7개국에서 70명이상이 사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3. 미얀마의 인권상황

1988년 3월 미얀마 사회는 격동기를 맞이 하였다. 학생들과 승려들에 의해 주도된 대규모 시위대는 26년간 지속된 군부의 일당독재 체제의 종식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시위는 몇달간 지속되었으나, 결국 1988년 9월 18일 군부는 쿠테타를 일으키고 헌법을 폐지하였으며 새로이 미얀마를 지배하는 기구로써 “국가법 질서회복위원회”(SLORC)를 결성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쿠테타 직후 “국가법 질서회복위원회”는 1990년 5월에 야당의 활동을 허용하고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기만적인 약속을 하는 동시에 수천명에 달하는 야당인사, 학생 그리고 승려들을 체포한다. 야당진영인 “민족민주연맹”(NLD)은 1990년 5월의 선거에서 주요인사들이 대부분 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80%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법 질서회복위원회”는 의회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1991년 초 일련의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 1995년 7월 8일 “국가법 질서회복위원회”는 계엄령을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이었다. 1993년 1월 “국가법 질서회복위원회”는 새로운 헌법을 구성하기 위해 결성된 “국민협의회”를 연기 하였으며, 계속해서 이 협의회의 활동을 장악하고 지연시키고 있다. “국가법 질서회복위원회”는 야당, 소수부족민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1992년 4월 약 2,000여명의 정치범을 석방하고 1995년 7월 11일 아웅산 수키여사의 가택연금을 해제하는 등 몇가지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인권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약 1,000여명의 정치범등이 구금되어 있으며, 열악한 구금소내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미얀마 인구의 1/3을 차지하며, 대개 국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카렌, 몬, 산, 카레니 그리고 룽하야등의 소수부족민에 대한 탄압은 1984년 이후 확대되고 있다. 소수부족의 독립을 요구하는 카렌 무장반군등을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이들 소수 부족민들은 임의로 징발되어 강제 노역에 동원되기도 하며, 임의적으로 체포되거나 고문 심지어 비사법 처형에 처해지고 있다. 구금된 수천명의 소수부족민들은 거의 고문을 당하며, 여성들은 강간등 성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예 흐투(Ye Htut)는 랭군의 군 정보요원에 의해 1995년 9월 27일 체포되었다. 그의 체포이유는 미얀마와 우호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항단체에 “날조된 정보”를 보냈다는 것이다. 12월에 그는 7년형을 선고받았다. 미얀마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자들 그리고 그 비판자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군 정보국의 감시가 아주 만연되어 있는 실정이다. 외국 사람들과 만나거나 교신한 사람들은 특별히 감시나 체포, 투옥의 우려가 크다. 예 흐투 또한 이러한 유형의 희생자이며, 예 키 아웅(Ye Kyi Aung) 군 정보국에 구금되었다가, 후에 재판을 위해 정신병자를 수용하는 감옥으로 이감되었다.

4. 인도네시아의 인권상황

1965년 10월 1일에 발생한 군사쿠테타는 금세기에 발생한 가장 끔찍한 대량학살들중 하나를 발생시켰다. 1년동안 약 오십만명에서 일백만명의 사람들이 살해되었다. 인도네시아의 현정부는 쿠테타에 의한 핏물속에서 권력을 잡았다. 30여년이 흐른 지금, 쿠테타와 그 여파는 여전히 인도네시아에서의 정치적 생활과 정부의 인권정책과 실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쿠테타이후 약 일백만명의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공산당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 적어도 십만명의 사람들이 영장이나 재판없이 14년동안 구금되었다. 오직 천명정도가 재판을 받았을 뿐이다. 이들은 사형 또는 장기형을 선고받았다. 대부분이 1979년 석방되었지만 약 30명의 사람들은 아직도 감옥에 있고 6명은 감옥안에서 사망하였다. 최근 인도네시아정부의 공식 보고는 이러한 수인들 중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이자 인도네시아 공산당원이었던 수카트노는 25년 이상 감옥에 갇혀 있다. 스카트로는 관용을 청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하였

으며, 사형집행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인 관용을 청원할 경우, 사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남아있는 법률적 절차가 더이상 없었기 때문이었다. 1993년 9월 수하르토 대통령은 국제의원연맹이 수카트노를 위해 요구한 청원을 거부하였다. 수하르토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구속된 수인이 참회하지 않는 한 결코 관용은 주어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형을 집행할 수 밖에 없다.”

인도네시아 공산당과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은 매우 불공정하게 진행된다. 쿠테타 이후 밀어닥친 광폭한 반공주의는 소위 인도네시아 공산당원을 보호한 사람들에게 까지 그 영향을 끼쳤다. 변호사들도 공산주의자를 동정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거나 위협과 협박을 받았다. 많은 증인들이 고문에 의한 자백에 근거하여 구금되었다. 특히 재판은 매우 편파적이었으며,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인도네시아 공산당소속 고위간부들이 재판을 받은 특별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공산당 관련 수인들에게는 항소의 권리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항소가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10년 또는 20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겨우 알 수 있었다.

석방된 이후에도 수십만명의 인도네시아 공산당원들과 그 지지자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매우 심각하게 제한당하고 있다. 이들 대다수가 범죄를 자행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원증명카드에는 이전 정치적 수인이었음을 알려주는 “ET”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 이 표시는 정치적 수인들 및 1965년 쿠테타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정치적 구금자들의 가족들에게 까지 법률적 제한은 물론 정치적, 사회적인 제약을 주고 있다. 현재 이 표시는 약 백만명의 사람들의 신원증명카드에 기록되어 있다. 이전 수인들, 인도네시아 공산당원들 그리고 이들의 가족들은 대중 홍보와 관련한 직장을 가질 수 없다. 즉 언론인, 교사, 동장, 배우, 인형극 공연자, 성직자 등이 될 수 없다. 이들은 집이나 마을안에서만 거주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거주 이전의 자유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들은 이사하거나, 여행을 하고자 할 때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수천명의 사람들은 국외로의 여행이 금지되어 있다.

이전 인도네시아 공산당원들은 정치적 제약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정부나 군당국이 그들의 태도나 행동을 조사한 후 특별히 허용할 때 투표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1992년의 선거에는 3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공산당 지도자들중 일부만이 계획된 쿠테타에 대해 알고 있었을 뿐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공산당원과 지지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그리고 쿠테타에 대한 어떠한 기능도 수행할 수가 없었다.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책임은 조작되어 엉터리 신화로 남았다. 광폭한 반공주의는 이를 구실로 삼아 기승을 부리게 되었으며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

오늘날 반정부주의자들은 제4세대 공산주의자라고 명명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공산당이 국가를 배반하였다는 식의 사고는 소위 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한 사람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고 국민적 영웅으로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경향을 만연시키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최근 역사를 보면 수십만명을 살해하고 명령한 사람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 다만 살해된 사람들 자신이 죄값을 받았을 뿐이라고 치부하고 있다

5. 한국의 인권상황

90년 7월 한국정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CCPR)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인권보호를 위한 이러한 국제적 약속은 인권개선의 가장 중요한 장애물인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인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신정부 출범후 약 3달이 지난 지금,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사람들의 숫자가 약 100여 명에 이르며, 장기수를 포함하여 약 500여명의 정치범들이 현재 구금되어 있다. 1991년 5월 11

일 국가보안법은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됨으로써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일부 축소하였으며, 금품수수, 잠입·탈출, 친양·고무·동조, 회합·통신 등을 수정하여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행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도록 목적요건을 추가하였다. 또한 국가기밀개념을 일부 축소하여 요건을 강화하고, 불고지죄의 일부를 축소하였으며, 국외공간계열 관련행위를 제외되었다. 오랜 기간동안 여전히 그 기본근간을 유지한 채, 시기시기마다 정권의 이해에 따라 국가보안법은 수정, 확대, 축소되는 과정을 거쳐왔으며 그 존재목적과 적용에 있어 수많은 인권침해와 시비의 주체이다.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가에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제정과정에서 위헌적 요인이 있다는 제기와 정부가 제정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국가안보의 기능보다는 법적 적용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정권유지와 정부반대세력을 탄압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단지 국민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행사가 국가보안법의 추상적이고도 애매한 조항과 법해석에 의해 체포와 구금의 이유가 되고 있는 현실은 현정부가 자유와 민주화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실질적 개선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현재 한국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의 이사국이다. 그러나 93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회를 권고 받았으며 국제노동기구로부터 노동쟁의조정법내 제삼자 개입금지조항에 대한 폐지를 권고 받았다. 이러한 상호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지금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노동법의 조항들도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로 제한하고 있다. 노동쟁의과정에서의 “제삼자 개입” 금지조항은 다른 노조에게 자문을 주거나 지지하였다는 이유로 노조지도자들을 체포와 구금에 직면하게 한다. 정부당국은 자신들의 노동권리들에 관해 노조원들에게 가르쳐 준 충고도 “제삼자 개입”으로 간주한다.

실제에 있어 고문과 가혹행위는 계속되고 있으며, 혐의자들을 심문하는 기관들은 잠 안재우기, 위협과 협박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하며 때때로 구타를 가하기도 한다. 특히 잠 안재우기는 수사를 위해 필요한 한 형태로 이해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정치적 혐의자들에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법률이 수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침해 희생자들에게 배상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보장장치는 미흡하다. 정치적 수인들은 통상적으로 체포될 때 자신들의 권리를 고지받지 못하며, 통상적으로 자신들의 가족이나 변호사들을 적절히 접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다. 또한 종종 재판 이전부터 유죄 취급을 받고 있다. 강요된 자백이라도 재판에서는 인정되며, 명백히 인권침해가 자행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기전까지는 인권침해에 관해 조사하지 않는다. 심지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경우에도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는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 실시되지 않으며, 대개 검찰은 사법공무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

6. 아시아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제안

아시아지역 정부들의 사고와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지만, 다음의 3가지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첫번째, 인권, 시민운동진영은 아시아 지역을 이해함으로써 아시아문화를 존중하고 그 사회의 근본문제와 정치적 안정, 인권개선을 위한 활동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는 억압을 가장하기 위한 정부들의 솔수에 놀아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두번째, 인권, 시민운동진영은 보편성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아시아인들 스스로 인권과 자신들의 모습을 포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다. 마지막으로 인권, 시민운동진영은 현재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있는 아웅산 수키처럼 자신들의 고유한 진보적 역사를 창출해야 한다. 결국, 인권, 시민운동진영은 인권교육, 자료발간, 저항운동 등에서 지금까지 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세계의 미래는 작금의 잔혹성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아시아는 과거든 현재든 간에 이러한 문제에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고향 떠난 자들(이주민, 난민)과 함께

위험을 감내 할 순간

세계교회협의회는 개신 교회와 정통교회로 이루어진 전 세계적 기독교 단체이다; 332개 회원 교회들이 전세계적으로 100여 나라 이상에서 기독교 사회를 대표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회원 교회들이 다른 어떤 목적보다도 기독인의 단결, 일반 신도들의 화충, 복음전도, 인간 상황에 관한 관심 표명과 교회 부흥을 조장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세교협 난민/이주국은 회원 교회들이 난민, 이주민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강제 퇴거당한 이들과 더불어 성직을 수행하고, 전세계적으로는 고향 떠난 사람들을 위한 정의와 존엄 실현을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해 지원과 조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난민/이주국은 인적자원을 지원하고, 교회의 전망을 발전시키고, 교회 상호간의 협의를 촉진시키며, 그리고 교회의 관심을 세계적인 토론장으로 이끌고 있다.

난민/이주국은 세교협 프로그램 중 4단락인 “분배와 봉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페이지에 수록된 세교협 난민/이주국 주소로 서신 요청을 하면 여기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세교협 중앙 위원회 성명에서 “고향 떠난 사람과 위험을 감내할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에 관한 세계교회협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단독으로 천명되었다. 이 책은 세교협의 정책 성명을 바탕으로 써졌지만 전체적으로는 세교협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은 아니다.

이 책의 각 부분과 소재들은 사전 고지에 의해 자유로이 재 간행될 수 있다; 다른 출판물로 재 간행된 복사본을 세교협 난민/이주국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집과 지역사회와...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내 남편은 고향에 남겨져 있고... 내 여섯 살 박이 아이는 아파서 우리와 함께 올 수 없었고, 그들이 그 애를 다른 수용소로 보냈어요... 11살 짜리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내 곁에 있지 않은 내 남편과 아이들, 내 딸과 아들, 친척들이 걱정이 되요... 삶이 이전처럼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이 이전처럼 다시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죽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아직 안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수용소에 있는 많은 여자들이 도망치다 잡혀 강간당했어요. 심지어 수용소 안에서조차... 그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을 지,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 평화가 우리 민족에게 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난민 여성-르완다

머릿말

(성명서의 배경)

1995년 10월, 세계교회협의회의 중앙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고향 잃은 사람들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제목의 포괄적인 성명을 채택했다: “고향 잃은 자들과 함께 위험을 감내할 순간”

이 성명은 난민과, 국내적으로 강제 퇴거당한 사람들과 이주자를 위한 협의회의 관심을 전 세계에 인식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발표되었다. 그리고 고향 떠난 사람들이 처해있는 많은 어려움에 대해 교회의 능동적인 대응을 고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성명은 강제퇴거의 다양한 원인과 그 결과를 확인시키며, 행동을 위한 확실한 지침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 성명은 수 년 간에 걸쳐, 고향 잃은 자들과 함께 한 교회의 활동을 통해 획득된 경험과 지혜를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세교협 회원 교회들과 전 기독교 조직,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공헌으로 이루어진 18개월 과정의 산실이라 할 수 있다. 100여개 이상의 교회들과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보이는 그룹들이 관심을 표명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량의 문헌을 제공했다.

몇몇 지역에서는 지역적, 국가적 기독교 단체들이 자문기구를 조직하여 중앙위원회 성명과 이 책의 진전에 뚜렷한 기여를 했다.

이 책은 두 가지 목적 하에 써어졌다. 첫째로, 이 책은 강제퇴거의 많은 원인과 그 결과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 간의 의견교환까지 포함하고 있다. 사람들을 고향과 자신들의 나라를 떠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묘사하고 있으며, 오늘날 강제퇴거의 근원적인 원인에 관한 더 많은 숙고를 하게 할 의도로 써어졌다. 이 책은 고향을 잃은 사람들과 그들이 뒤로 남겨둔 그들의 지역사회와 안식처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충격과 어려움을 묘사하고 있다.

둘째, 이 책은 교회가 인간존엄과 유지 가능한 지역사회를 조장할 수 있도록 예언적, 실질적 기능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책에서는 인간이주와 기독인의 책임에 관한 논리적인 사고를 염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망상조직이 가능하고, 지지를 얻고, 실천할 수 있다는 암시와 생각들을 뒷받침하는 전 세계의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인 행동사례인, 일련의 ‘희망의 표시’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마지막 장은 전 세계교회 공동의 행동에 대한 하나의 틀이 되어 온 세교협 정책성명 중 하나인 ‘행동으로의 요청’의 복제판이다. 성경연구, 설교, 연구집회 결성을 위한 지침, 정책발전과 지지와 그밖의 유용한 목적 등을 위해서는 이책의 기본적인 소재사용의 가능하다.

이 책에서 오늘날의 강제 이주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주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거나 기대해서는 안된다. 이 책은 정책발전 과정의 방향을 잡도록 의도되어 있고, 이주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전 세계 성직자들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의도로 써어졌다. 협의회의 정책이 동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정책발전과 다른 차원에서의 교회의 책임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제공되고 있다. 해답이 분명치 않은 곳에서 이 책은 여러 질문을 정형화시키고 교회로 하여금 지속적인 숙고과정과 행동과

정에 몰두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교회가 인간존엄과 지속성을 경배하는 가치관에 바탕을 둔 세계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형성시켜 줄 것을 기대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서론

세계교회협의회와 그 회원종파들은 50년 동안 난민과 강제이주자와 함께 성직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당장의 천직-위급 상황으로의 부름으로 보았다. 이 기간 동안에 각 교회는 전세계의 수백만 난민들을 재 정착시키기 위한, 수백만의 난민수용소 감금자들을 위해 지원과 희망을 주기 위한, 활동의 최전선에 있어 왔다. 다른 종파의 교회들은 이주자와 이민자에게 용기와 봉사를 제공해 왔다. 교회로 피난온 많은 노동자들은 이주의 원인이 된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어 결국에는 다시 고국에 돌아가리라는 희망을 일했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러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인간의 역사를 통찰해 보면, 사람들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이주는 질적으로 새로운 생황으로 대체시키고 있다. 인간의 유동성은 최근에 극적으로 증가해왔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살려 애쓰고 있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동이 직업, 교육이나 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자발적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이주는 강제적이다.

강제 이주라고 하는 것은 혐난한 시기의 극적인 현상이 되어왔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인간의 강제치환의 가속을 보아왔다. 많은 나라에서 각 정부와 시민 사회는 국경 내에서, 국경 맞은편에서 사람들의 이동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우려를 가지게 되었다.

국내, 국제적 토론장에서 사람들의 이주에 관해서 허용과 지원에서 관리, 조절 그리고 거부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세해 왔다. 냉전 시대에서는 이주에 대한 주도적인 의견은 이주자들을 격려하고 수용하는 쪽이었다. 적어도 소위 공산주의 국가에서 망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 왔다.

특히 냉전이 끝난 이후에는 이전에는 억눌려 왔던 인종적, 민족적 적대감이 중대한 분쟁요인과 수백만의 사람들의 강제이주라는 양상으로 흘러나왔다.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수백만의 더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거나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고향 떠난 사람들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고 인간 존엄을 수호할 세계 경제와 사회의 실패원인으로 여겨졌다. 그와 동시에 이주자에 대한 외국인 혐오감이 모든 지역에서 극적으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지난 몇 년에 걸쳐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을 위한 보호장치를 제공할 정부의 의지는 심각하게 악화되어왔다. 난민과 이주자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공중의 여론은 훨씬 확실하게 적대적으로 변해왔다.

이러한 악화된 상황은 고향 떠난 사람과 함께 일해 온 성직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주장해온 가설과 업적들의 많은 부분들이 의문시되고 있다.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되어 왔는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이뤄 냈는가? 우리의 작업이 인간상황과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향상시켜 왔는가? 우리가 이러한 악화된 상황의 공범자였던 것은 아니었던가?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상황의 변화와 우리의 경험을 파악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혐난한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영감과 교훈을 우리의 과거작업으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겠는가?

기독 성직자들은 이러한 질적으로 새로운 상황변화의 규모와 본질에 대해 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보다 더 많은 유동성을 지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강제 이주자들에게 슬픔을 표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과연 주도적 세계경제체제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강제이주의 근본원인을 규정짓고 이러한 지배적 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가 지구의 한정된 자원을 동등하게 분배할 것을 주장하고 실행할 수 있는가?

이주자의 수치(The dimensions of forced displacement)

이주와 관련한 국제기구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1995년에 1500만의 알려진 난민과 전쟁이나 인권유린에 의한 3000만의 국내강제이주자, 그리고 8500만의 세계적 이주자가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의 수를 합치면 거의 50명당 1명이 이주자인 셈이다. 여성과 그들의 부양가족이 알려진 난민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총 이주자의 거의 절반이 여성이다. 미아도 난민과 강제이주인구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주관련 전문용어에 대한 국제적, 지역적 정의

난민은(refugee) 국제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인종, 종교, 민족감정, 특별한 사회단체 회원이나 정치단체 회원 등과 같은 이유로 박해를 피해 망명한 사람, 그리고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보호받기를 거리거나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 1995년,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과 의정서에 서명한 회원국가는 121개국이었다. 아프리카와 남미의 지역기구들은 난민의 정의를 확대시켰다. 이 기관들의 정의에 따르면 난민은 내전, 무력갈등, 일반적인 인권유린에 의한 회생자(개인과 단체)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적 정의는 보편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부록 1 참조:난민에 대한 세계적, 지역적 정의) 난민에 대한 보편적 합의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에 합치하는 사람은 강제적으로 고국으로 보내서는 안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협약 중 어느 것도 각 정부에게 안전한 피난처나 보호시설 제공을 강제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시설을 찾는 사람들(Asylum seekers)은 위에서 언급한 난민정의를 바탕으로, 특정국가로부터 육, 해, 공으로 탈출하여 난민지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강제이주자(Internally displaced)는 보다 더 광범위한 난민정의에 합치되는 사람을 포함하지만 자신의 고국을 떠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 용어이다. 국내강제이주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거나 그들의 인권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명확한 범주로 포함시키려는 국제적 합의는 없다. 국내강제이주자에

관한 유엔사무총장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그들에 대한 잠정적인 정의를 살펴볼 수 있다: ...국내강제이주자라고 하는 용어는 갑작스럽게 혹은 예기치 못하게 무력갈등, 내전, 인권에 대해 조직적 유린, 혹은 천재와 인재의 결과로써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이주를 당했던 사람들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국가라고 하는 범주 내에서만 한정되는 용어이다¹⁾.

국제이주노동자(International migrants)의 범위는 대단히 광범위하다.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일하기 위해 국경을 넘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사실상 영구적으로 다른 나라에 정착하기 위해 이주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오늘날의 많은 국제이주노동자들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심각한 몰락으로 인해 자신의 고국을 떠나야만 했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전제이다. 예를 들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환경적 요인의 몰락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이주 당해 왔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 경제, 사회적 여건을 피해 이주해 왔다. 하지만 그들이 고국을 떠나는 여건은 현재의 국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박해받는 사람들과는 성질이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적, 경제적, 그리고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여건에 기인하여 자신들의 고국을 등져야만 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호조치와 지원에 관해서 어떤 국제적 표준이나 체계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하지만 삶을 위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기준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있다. 수백만의 이주자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서 이동하고 있다. 만일 그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아니면 심지어 경제상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고국과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것이다.

최근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은 이주자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규정하고 요청하고 있다. 이것은 199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지만 이제까지 9개국만이 비준, 서명했을 뿐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또한 이주노동자에 관한 두 개의 협약이 있다. 하나는 1949년에 발표된 “이주자고용협약 Migration for Employment Convention”(97쪽)이고 나머지 하나는 1975년에 발표된 “보충규정 Supplementary Provisions”(143쪽)이다. 불행히도 38개국만이 이 두 협약에 모두 비준했고 15개국은 어느 한 쪽에만 비준했다.

세교협 정책 성명은 고향 떠난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다양한 원인으로 자신의 지역사회를 떠나서 다음과 같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 난민(refugees), 국내이주자(internally displaced), 보호시설을 찾는 사람들(asylum seekers), 경제적 원인의 이주노동자(economic migrants).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불여준 명칭과는 관계없이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자신들의 땅과 문화를 떠나도록 강요당한 모든 사람들을 고향 떠난 사람들에 포함시킨다. 고향 떠난 사람들이란 자신의 지역사회를 떠나도록 강요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박해와 전쟁 때문에 고향을 떠난 사람들, 황폐화된 주변환경으로 인해 이주를 강요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고국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딴 도시나 외국에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강요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²⁾.

전문용어속지

법적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옛 국가에 있어야 할 서류가 결여된 이주자와 난민 그리고 다른 외국인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된 ‘불법 체류 외국인’illegal aliens이나 ‘불법이주자’illegal migrants라는 용어는 점점 유행처럼 이용되어 왔다. 인간존재의 위상을 불법으로 정의하는 전문용어의 사용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국을 떠나도록 강요받는 근본적인 원인을 오역하고 있다.

불법 Illegality이라는 전문용어는 이제 몇몇 나라에서 -선진 민주국가를 포함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선이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성직 서임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토대로 사용된다.

이주민의 지위와 관련하여 덜 선동적인 용어가 사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덜 선동적인 용어사용이 표준이 되어야만 한다. 유엔과 이주민을 위한 국제기구는 허가받지 못한 이주나 입국을 ‘변칙이주’irregular migr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밀입국 이주자’undocumented immigrants나 난민 그리고 법적지위를 얻지 못한 out of status 사람들 등과 같은 전문용어는 인간을 불법적이라 규정하지 않고서도 이주민의 법적 지위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고향 떠난 사람들의 지역적 수치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지원을 받는 난민 수

아프리카.....	6,752.2
아시아.....	5,018.3
유럽.....	1,867.4
남미.....	109.0
북미.....	681.4
오세아니아.....	51.2
총계.....	14,479.5

출처: 유엔난민고등판무관(1995). “세계 난민의 상황, 1995”: “해결책을 추구 하며”. 옥스포드 대학출판사, 영국, 247쪽

1995년에 난민을 위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으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총 수는 27,418,900명이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관심 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류를 보려면 부록 2 참조 바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이러한 수치는 250만 팔레스타인 난민 수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이들은 이제까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 유엔구제작업국 (United Nations Relief Works Agency)의 위탁 하에 있어 왔다..

국내강제이주자(Internally displaced persons)

유엔사무총장 대리 프란시스 뎅이 국내강제이주자에 관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들의 수가 3000만을 초과하고 있다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수치는 심각한 강제이주가 존재하는 몇몇 나라에 있어서는 믿을 만한 통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다. 게다가 규모가 적은 나라거나 유엔 회원국이 아니거나 다른 세계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강제이주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국제사회로부터 잊혀질 수 있다³⁾.”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	16,000,000
아시아.....	6-7,000,000
아메리카.....	3,000,000
유럽.....	5,000,000
총계	30-31,000,000

출처: “인권, 대량탈출 그리고 강제이주자, 국내강제이주자” 유엔사무총장대리 프란시스 뎅이
51차인권위원회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

이주자(Migrants):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가장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7-8천만 명의 세계적 이주자와 무국적자들이 전세계에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세계적 이주와 관련한 각 나라의 통계는 유감스럽게도 빈약하다. 그들은 밀입국한 사람들의 수치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단지 몇몇의 사람들만을 상계하고 있다” 그들이 조사한 통계를 살펴보면:

아프리카.....	16-20,000,000
아시아.....	6-9,000,000
유럽(구소련과 구유고를 포함해서)....	20,000,000
북미.....	15-17,000,000
남중미.....	7-12,000,000
서아시아(아랍국가를 포함해서).....	6-7,000,000
총계.....	70-85,000,000

출처: 국제노동기구, “세계이주와이주노동자” 고용과 사회정책에 관한 제256차 위원회, 제네바, 1996.3(GP267-ESP-2): 4쪽

세계적 이동(Global Movement)

시장경제의 세계화는 자본, 기술, 상품, 교역의 국제적 이동을 가속화 시켜왔다. 부정적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긍정적 이유에서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은 불가항력적으로 증가해왔다. 통신과 운송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지역의 각 나라에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을 피해 안전한 피난처를 갈구하는 사람들의 이동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여행이 촉진되었다. 이러한 발전에 따라 사람들은 다른 장소로의 상황과 선택권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 책이 강제퇴거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다른’ 이유들 때문에 국제이주가 증가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제활동의 국제화는 노동시장의 국제화를 가져오게 하였고 외국배치 시에 국제경험과 적응훈련이 많은 부분에 있어- 마케팅, 호텔, 통신부문과 같은 노동자와 전문직업인에게 필수적인 것이 되어왔다. 국가상호간에 인적자원의 교환은 다국적기업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산과 서비스라고 하는 새로운 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주노동자와 전문직업인에 의존해 오고 있다. 몇몇 나라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국내 노동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까지 한다. 이러한 이주노동력은 종종 생존의 문제로써, 이주하려는 나라에서 정치적, 경제적 면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고국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경향(major trend)

인간역사에 있어 이주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인 측면과 종종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광범위한 인간이동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으로 변화해 왔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적 인간 이주에 대해서 질적으로 새로운 상황으로 이끌고 있다:

1. 사람들의 생활이 가능하게끔 했던, 그리고 그들의 전통적 지역사회와 자신들의 나라에서 거주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주위의 환경적 여건들이 점점 심각하게 붕괴되어 왔다.

2. 냉전이 종식된 아래로 무력갈등이 증대되어 왔다. 오늘날의 전쟁은 국가 간에 일어나는 것이기 보다는 대부분 국가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치지도자들은 알파한 국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교와 인종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가 단일화 되기 보다는 분열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3. 대부분의 난민아동과 국내이주는, 많은 수의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보조할 최소한의 자원을 가지지 못한 나라들인, ‘南’의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다.

4. 늘어나는 세계적 경제침체기간 동안에 이주가 전 세계 모든 지역 안에서 그리고 지역간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5.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 혐오주의가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러한 적개심은 종종 폭력으로 표출된다. 이제는 이러한 현상이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만연하고 있다.

6. 선진‘北’의 나라가 이끌고 있는 각 정부에서는 사람들의 이동에 대해 엄격한 이민통제와 가혹한 ‘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선진 정부들은 국제이주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화’시키려하고 있다.

기독인의 책임

기독인과 기독교회는 교의에 따라 고향 떠난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자선을 확장시키고 정의, 평화 그리고 부활을 위해 활동해 오고 있다.

모든 기독교회는, 전쟁으로 얼룩진 그리고 종종 대표할 자격 없는 엘리트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정부의 협소한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정치단체들에 의해 주도되는 세계에서, 기여할 뭔가가 있다. 성직자와 자원봉사자는 고향 떠난 이들의 복지회복과 보호에 있어 종종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많은 교회는 전세계 각 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 없는 이들에게 부족함 없이 공평하게 자원을 분배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도우면서, 지역적 수준으로 활동해 왔다.

이방인에 대한 자선은 기독교리의 근본적인 요소이다.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거부나 온정적 봉사를 의미한다기 보다 인간화, 그것에 대한 확인, 자선 그리고 교회의 생활과 책임 속에서 고향 앓은 사람을 포함시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것은 또한 특정 행정기관에 위임된 책무가 아니기 지역교구의 책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예언적 말씀이 구조적 부정에 대한 비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예언적 말씀은 교회로 하여금 신의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고 대안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안 사회란 억압적이며 유지 불가능한 체제는 비난받는 사회일 뿐만 아니라 비합법화 되는 사회를 말한다. 교회가 마땅히 인간관계의 새로운 전망을 유행시킬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대안 사회가 되어야만 한다.

최근 경험을 살펴보면, 교회는 강제이주의 결과에 부응할 뿐만아니라 그 원인을 이해, 완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어 왔다. 강제이주에 관한 전통적인 접근과 활동이 악화되어가는 상황에 충분히 대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방향을 잡는 것 이 필수적이다. 오늘날, 강제이주의 복잡한 원인과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교회성직자와 일반신도들의 노력들이 타당하고 통합된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고향 떠난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봉사와 응호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도주의적 이유로 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기관들과도 공조를 취해야만 한다. 이것은 또한 정부당국자와 정부단체들과의 토론과 어쩌면 협상으로의 진입을 의미하기도 한다. 짐바브위의 교회들이 표현한 것처럼 복음전도라고 하는 불빛 속에서 땅을 떠난 사람들을 지지한다는 것은 어쨌든 사랑을

의미한다.... 신의 무조건적 은총의 반영인⁴⁾.

사랑과 관심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복음의 가치가 우리 교회로 하여금 기독인의 활동과 말씀을 전이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도록 명하고 있다. 전세계의 모든교회는 난민, 이주자 그리고 강제퇴거자를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돋기 위해서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고려해야 한다. 너무나 자주 난민과 이주자를 위한 우리의 성직이 교회의 일상 곁면에 머물러 있다. 우리 교회는 강제이주라고 하는 위급한 문제를 성직과 말씀의 중심에 위치시켜야만 한다.

기독교인과 교회가 억압받는 자, 박해받는 자, 주변부에 위치한 자, 그리고 고통과 투쟁, 희망으로부터 배척받은 자와 함께 하기를 요청받고 있다. 이것은 고향 떠난 사람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성직으로의 부름이며, 복음과 봉사라고 하는 예언적 교리를 떠받치는 성직으로의 부름이다디아코니아. 문학적, 은유적 의미에서 동행이라는 것은, 실제로 고향 떠난 사람들과 ‘함께 걷는 것’ 그리고 그들과 동행이 되는 위험을 감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세교협 정책 성명이 다음과 같은 제목을 갖게 된 이유이다: 고향 떠난 사람들과 위험을 감내할 순간이란 그들과의 동행과 희망을 향한 여정일 뿐만 아니라 길 떠난 사람들과 함께 보고, 듣고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희망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행동강령(성명서)

우리는 교회들이 행동강령을 설립함에 있어 이를 보조키 위하여 "A MOMENT TO CHOOSE, RISKING TO BE WITH UPROOTED PEOPLE"(선택시기; uprooted people에게 있을 위험들)이란 WCC(세계교회협의회)의 정책 성명서에서 나온 행동강령을 재차 발행합니다.

제안된 행동지침은 확인명세서가 아니라 이는 교회가 다같이 참여함으로 포괄적이고 상호 된 연관 행동지침을 계획하는데 있습니다.

행동 강령의 당위성에 대한 개개인 그리고 각 국의 종교단체 그리고 전 기독교 단체의 의지에 따라 각각 그들의 행동지침의 이행 순위가 주어지면서 본 강령은 uprooted people들이 자국이나 그들의 공동체를 떠나도록 강요하는 힘에 저항하며 대응하는 거미줄 같은 구조 안에서 이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접근 가운데 상호 연결성에 있어 그 전망과 현실성을 협의하는 것이 바로 핵심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과 교회들이 강령을 이행할 것을 요망합니다.

행동지침의 이행은 이의 성패와 uprooted people에 대한 종교적 대응과 또한 이들의 격리(구금)의 원인을 심사숙고하면서 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경신(구제)란 격리(구금)에 대한 원인 그리고 uprooted people을 교회의 중심 생활로 유도하는 필요성으로 신학적 그리고 성서적 반영을 가져오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uprooted people에 대한 문제는 정책 수립, 결정위원회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는 핵심 단체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에 연관되는 프로그램과 교회는 반드시 설립되고 또한 강조되어야 합니다.

본 임무는 전 그리스도교회적 일이며 세계적인 일입니다.

교회들은 다함께 노력하여야하며 시민단체 어느 부분과도 협력하여야 합니다. 많은 서로 다른 단체들이 uprooted people에 대하여 심도있게 서로 연대하여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는 조직적으로 펍박하는 제도적 구조에 대하여 한 단체만이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uprooted people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은 역시 정부와 같이 이 일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 또는 국제적인 정책 논쟁의 한 부분인 이 문제를 협의, 타결하는 과정에서 교회들이 어떻게 그들의 주장과 확신을 관철시킬 수 있는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명과 품위를 향상시키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WCC의 회원교회로써 또한 연관된 전 세계 그리스도 교회의 단체로써 세계 안의 정의와 평화를 부흥시키며 uprooted people과 함께

동반하는데 전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그리고 교회들이 가질 수 있는 본 강령은 각 나라와 지역의 성격에 따라 다양화 될 것이며 교회들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하여금 서로 돋고 서로 같이 협조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이주민의 생명과 인격향상

우리는 회원교회들이 이주민에 관계되는 피난민, 그리고 국제적으로 격리(구금)된 사람과 이민자를 보호하고 그 권익을 향상시키도록 요구합니다.

A. 이주민에게 임시 안식처와 피난처 제공

- 피난민 정착을 위한 후원회 제공
-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성역 확장
- 범죄형성에 반대한 소녀 및 버려진 여성 보호 확보
- 이주민에 대한 보호에 제한을 두려는 정부 정책에 반대

B. 법적 방어와 인권

- 망명이나 안식처를 요청키 위한 법적 절차를 추구하는 가족이나 개인 보조
- 이주민이 만행의 위험에 처해 있는 피난민 camp, 공항, 국경들에서 옹호
- 관계되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보호를 제공하는 정부와 함께 협력
- 외국인에 대한 폭력 규탄을 위한 발표작업, 선언서 채택, 규탄 결의서 채택하기

C. 국제협약의 이행 촉진

- UN 협약 및 피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 합의서와 완전 이행과 그 비준 촉진
- 모든 이민 노무자와 그들의 가족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서의 이행과 그 비준 촉진
- 행정상으로 아동에 관한 권리와 버려진 어린이에 대한 옹호관련 국제협약서 사용
- 국제적으로 격리(구금)되었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귀국할 수 없는 사람 등 이주민을 위한 보호를 제공할 국가나 국제적 구조 기능을 발전시킬 연대 노력에 참여함

2. 정의와 평화를 위한 임무들

우리는 교회들이 강제격리(구금)된 이들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역점을 두기를 요망합니다.

A. 축출시키려는 정치.경제.사회 및 환경적 사유를 연구

- 축출된 사유와 귀국하려는 희망에 대하여 이주민의 진술을 듣고 이해하기
- 축출의 구실(분위기)을 조성하는 국가의 역할을 감시
- 축출 사유를 규명할 수 있는 교회들의 능력평가

B. 평화적이고 투쟁적인 결의로써 대처

- 교회 내에서 평화와 총체적인 책임에 대하여 교육 실시
- 투쟁 결의 시, 인도적인 구제로 안전한 사회적 공간을 창출하려는 중재, 협상전문가와 협조하여 수행
- 평화의 공동체 구성
- 단체, 조직, 인권활동에 있는 상호조합조직, 경제정의, 민족적 정의, 평화등의 단체 성격에 바탕을 둔 공동체와 연합체 구성
- 그들을 머무르게 하거나 귀국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같이 이런 문제를 방지하며 해결하는 특히 UN을 통한 책임있는 국제 활동을 응호

C. 경제 및 사회적 완전한 생활을 위한 활동

- 경제적 자급자족을 위한 지역 내 대안에 대한 지원
- 생동력 있는 공동체 건설의 일부분으로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와 이에 동반되는 권리를 장려
- 격리(구금)의 환경적인 사유에 역점을 두는 방법을 고려하는 법적 전문가 등의 관련 그룹과의 대화 확립

D. 그들의 고향 땅에서 안전하고 품위있게 머무를 인간의 권리에 대한 장려

- 그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보조와 추가 지원정책 같은 교류를 촉진
- 잔유하든지 혹은 그들의 지역으로 가든지 토착민 또는 식민지 사람의 선택적 권리 응호

3 이주민 공동체 만들기

우리는 교회들이 헌신적인 봉사와 차별 없는 지원과 연대성으로 이주민들과 같이 동반하기를 요망합니다.

A. 이주민이 잔유하든지 떠나서나 다시 돌아가는 결정에 함께 참여

- 잔유하거나 그들의 지역을 떠나든지 선택할 사람에게 현실성을 유지하도록 함
-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안전성과 공동체에 재결합되는 것을 감시하며 응호, 이주민이 그들의 본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과정을 보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B. 물질적, 사회적 그리고 정신적 필요성에 대답해 줄 봉사를 제공

- 이주민이 계획하고, 이행하고 또한 프로그램, 봉사, 전 그리스도교적 창의성의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성 확보
- 개개인이나 그 가족에 대한 위기 해소 봉사와 목회자 영적 치료 제공
- 무연고 부녀자에게 특별히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장려하며 공동체에 참여를 강조
- 그 가족과 분리된 어린이들이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응호
- 무연고 어린이에 대한 교육 발전과 정신적 감성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핵심적인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촉진

- 국제이민 기구이며 물자원조와 이주민 인권향상 기구인 UN 고등 판무관 응호

C. 이주민들의 솔선을 지원함

- 이주민들이 독립할 수 있게끔 공동체 개발 기회를 제공
- 이주민들이 결정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과 문제를 대응할 개인이나 조직을 강화시킴
- 이주민들의 공동체와 조직과 연합체 설립

D. 무연고 기독교인과 "함께"같이 함

- 무연고 기독교인들이 교회생활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환영하고 고무시킬 필요한 단계를 취할 것
- 기독교인의 전통의 다양성을 포용할 것
- 무연고 기독교인들의 집회를 재구성할 이들의 공동체를 원활하도록 지원함
- 이주민들과 솔선수범하는 것을 개발하면서 다른 교회들과 함께 일함
- 이주민들의 영적 선물을 받을 것

E. 다양한 삶의 영유

- 선입견과 공포 그리고 미신을 해소하기 위한 접대한 자와 이주민와의 대면하는 집회를 소집하고 참석함
- 인종차별, 외국인 기피증 그리고 이주민들에 대한 적대행위를 반대하기 위한 캠페인을 구성하라.
- 각 인종 중 이들을 선별하여 교회의 국제 인적 교류를 추진하라.

F. 공적 연대성 회복

- 교회,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국가에서 피난민의 날 혹은 "이민자의 주간" 설립을 추진하라
- 봉사나 기도가 가능한 곳으로 할 수 있으면 상호 신앙대회를 가져라
- 온전한 생활을 위한 교회의 이주민들에 대한 활동을 만들 교육과 인식을 개발하라
- 회망의 징표들(징조)

비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돌아서거나 혹 그들 중 한 가운데 이방인을 무시하지만, 어떤 기독교인과 교회들은 이주민 편에 있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자신들이 수 세기 동안 이방인이고 망명자 신분과 같다고 하였다.

회망의 징표는 세계를 통하여 새로운 목회자를 배출하여 전 그리스도 교회의 협조의 전달 수단을 그리고 인간의 품위 및 공동체를 유지할 교회의 솔선수범과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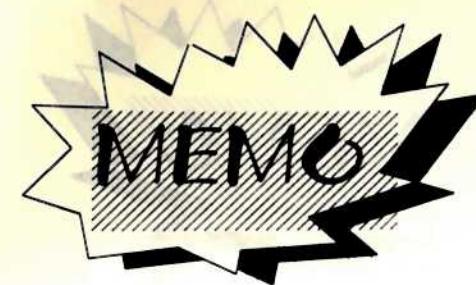
- 수많은 위험 부담 안에서도 크리스챤과 교회들은 이주민 편에 서 있다.
- 많은 크리스챤과 교회들은 이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불복종 활동을 함으로써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 많은 교회와 공동체 단체들은 그들의 생명과 안전에 있어 강요된 귀국이나 만행 때문에 위험에 놓여 있는 이들을 보호하고 도와주기를 찾고 있다
- 어떤 교회는 그들 자신 회원들 가운데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 기피현상과 감히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 무연고 부녀자 및 남성의 생존 전략은 그들의 처지에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 저항하는 능력과 그

들의 관심사에 역점을 둔 자기자신을 결집시키는 것으로 지적된다.

-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그리고 교리, 기초조직, 이웃 단체와 그 가족들은 생명의 가치 선상에서 대안적 삶의 방법을 이루고자 분투 중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주민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을 위한 교회로써 그들의 존재를 재발견 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의 가능한 모든 수준에서 봉사와 증언을 통하여 회원 교회들이 실천할 수 있기를 요망합니다.



“
이주민과 함께 할 선택의 순간입니다.

This is the moment to choose to be with uprooted people.
”

1) 유엔경제사회협의회, 제네바, 1992: “국내 강제 이주자에 관한 분석보고서”, E/CN.4/1992/93: 5쪽

2) 세계교회협의회: “고향 떠난 사람들과 위험을 감내할 순간”, 1995.9.25, 1쪽

3) 제51차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인권, 대량 이주 그리고 치환된 사람들. 국내 강제 이주자.”
(1995.2.2: 4-5pp)

유엔사무총장 대리 프란시스 덩이 인권해결위원회에 제출했던 보고서.

(1993/95, 1994/68. E/CN.4/1995/50)

4) 고향 떠난 사람들에 관한 WCC 정책 성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짐바브웨 교회가 사용한 어구
의 삽입